



지난 10월 16일은 유독히 필자를 찾은 전화벨이 요란스러웠다. 사실 인죽 레이건 대통령이 2차무역조치를 취하면서 한국에만 84통상법 301조를 들어 知的所有權인 工業所有權(物質特許), 著作權 및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Semi Conductor Chip)에 대한 開放을 요구함에 따라 이들 생소한 英語單語에 대하여 各新聞특파원들과 교포신문사에서의 문의전화였던 것이다.

한국에 대한 Product Patent(物質特許)에 대한 美政府나 團體의 Pressure는 필자가 한국특허청에 재직시에도 종종 받아 직접간접으로 시달린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로에게도 加壓國인 美國에 이민 와서 살면서도 미특허청 고급관리와 기업체 중진들과 만날때마다 이 문제가 이슈로 될때가 많았던것 만큼 더 충격적이었다.

다음날 Washington Post지에는 년간 1억 7천만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가 상세히 記事化되어 나와 耳目을 끌었다.

실로 商易에 대하여 별로 아는것



陳 今 燮
(在美辨理士·藥學博士)

는 특허청이나 특허협회나 변리사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조국의 무궁한 장래를 생각하여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創出해야 할 것이다.

이 美國의 知的所有權開放 Pressure앞에 너와 내가 있을 수 있겠는가?

10월 하순경에는 워싱턴에서 제3차 KDI/Blockings무역 Seminar가 있어 이때 知的所有權이 加味되었다. 10월 28일에 부총리께서 밝

美通商法 301條와

強한 對處方案새워

은 없지만 日本·東南亞·구라과·南美의 市場보다는 美國市場을 占하는 者가 世界무역의 勝者가 된다는 評論만을 익히 아는 필자로서는 美國의 處事に 望望을 하면서도 원망만하고 있을때가 아니라 이를 強하게 對處해 나가는 智慧를 짜내야 할때라는 생각이 보다 앞섰다.

하는 소행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지만 現實은 現實임으로 自求策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른 分野는 모르지만 우리 公業소유권분야

헌바에 의하면 당초 계획을 백지화하고 지적소유권문제를 신속성있게 미국에 대처한다는 정부방침을 발표하였다.

12월초에는 미국관리가 한국에 와서 직접 지적소유권에 대한 피해액을 조사하였다.

이 일련의 사태들이 知的所有權에 關한 것들로서 미통상법 301조에 따라 어떠한 다음 조치가 취해질지 모르겠다.

Ironical하게도 筆者가 근무하고



있는 B. S. K. B 특허법률사무소가 Washington street의 301번지요 社屋의 빌딩이름이 301이며 미국의 특허법률사무소에 유일하게 한국 변리사가 근무하여 한국인의 출원 건이 제일 많은 곳이고, 知的所有權만을 취급하는 사무소의 주소와 빌딩 이름이 우리한국에 強打를 加하고 있는 미통상법의 법조항인 301조와 같을 줄이야!

勿論 우연이겠지 하면서 筆者에

“어쨌든 오뚝이와 같은 韓民族의 끈질긴 열이 발휘되어 知的所有權의 발등의 불이 잘 鎮火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며 301번지의 301빌딩사무소에서 301건에 시달리는 祖國의 知的所有權분야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며...”

知的所有權

危機 넘겨야

계 知的所有權에 對한 祖國에의 보다 더 많은 헌신을 일깨워 주는게 아닐까? 생각도 해본다.

일찍이 필자와 본사무소의 美辨理士가 한국에서 2회나 Seminar를 했고 내년봄에도 계획을 하고 있으며, 特許協會와 姉妹결연을 맺었고 한국의 특허맨은 누구를 막론하고 본사무소에 초치하는 성의를 보였지만 이것으로 족할수 있겠는가!

적을 치고 방어하기 위하여는 먼

저 적을 알아야 한다는 孫子の兵法을 끄집어 내지 않더라도 美國의 知的所有權 制度를 특히 物質特許 制度를 깊고 넓게 그리고 實務的으로 알아야 할 때가 눈앞에 닥친 것이다.

다행히 근간에 미특허청방문이나 研修 그리고 우리 B.S.K.B 방문 및 연수등에 참여하는 한국의 Patent-Man이 많아 마음은 놓이지만 더욱 拍車를 가해 이들의 내막을 속속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가까운 日本이 그랬고, 西獨이 이미 10여년전에 그렇게한 歷史의 교훈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 Procedure가 끝난다음 우리의 대처방안을 세우며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物質特許 制度를 開放하면서도 審査과정에서 이 제도의 피해를 극소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現存하는 권리범위 확인 심

판제도를 活用한다든지 또는 Royalty의 지불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국내기업의 R&D 분야의 육성 및 자극, 기술자 우대사상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의 Moment로 삼아 기술의 후진성을 속히 탈피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오뚝이와 같은 韓民族의 끈질긴 열이 발휘되어 知的所有權의 발등의 불이 잘 鎮火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며 301번지의 301빌딩 사무소에서 301조에 시달리는 조국의 지적소유권분야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世界에 散在하고 있는 이스라엘民族의 祖國에 대한 熱情을 矚睽해보면서 85년을 아득한다.

(워싱턴 Birch, Stewart, Kolasch & Birch特許法律事務所에서)